

부산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1가단3167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1. 9.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02. 2. 1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소외 D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2. 접수 제321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11. 접수 제481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김미진

별지